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과장 김종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획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높이고 부천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13,368호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1.5.1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

나. 주요골자

① 현행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이 아니라, 건의하는 정도였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은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되었는바, 이 위임 사항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시장에게 건의 또는 자문하게 되어 있음.

② 도시계획위원회 기능강화 및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의회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 도시과장)

질 의	답 변
○도시계획위원회 17명 의원중 시의회 의원은 몇명으로 위촉됩니까?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되지만, 3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시 공무원과 전문가 비율은?	○현재 13명에서는 당연직으로 시장은 위원장, 부시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11명은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전문가 6명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4명으로 증원해줄 수는 없는지?	○검토하겠음.

4. 토론요지

해당없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건심사보고서

1991. 7. 22.

일반행정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1.7.11.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1.7.19.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 (1991.7.20) 상정

제2차 일반행정 특별위원회 (1991.7.22)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기획실장 김장호)

가. 제안이유

○ '91.5.31.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천시사무의구 및 동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1조(보고·검사)에 위반된다하여 '91.6.21. 부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건임.

나. 주요골자

○ 부천시의회에서 의결한 부천시 사무의구 및 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폐기물 관리법 제31조)에 위반됨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지방의회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따라 당초 의회에서 가결하였던 동 조례안을 부결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의 차이는?	·권한 위임은 도지사가 시장에 권한을 주어 위임한 사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 위임 가능 ·내부위임은 제위임 불가
·당초 제안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중 사무위임 사항을 확인하였는지?	·내용에 없었음
·가결시 문제점?	◦가결시 도지사의 불응으로 대법원 제소가 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피하고 따라서 같이 상정되었던 14개항의 조례안 관련된 업무의 지장 초래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요지(부결)
   - ㅇ 부천시와·경기도의 법해석의 차이가 빚어낸 사항으로서 도의 재의요구가 타당하여 부결키로 함
   - ㅇ 가결시 대법원에 제소되어 같이 상정되었던 14개항 관련업무 처리 지연의 우려됨으로 부결이 타당함.

5. 심사결과 : 부 결
6. 참고사항 : 재의 요구에 따른 기획담당관의 해명 및 보사국장의 사과가 있었음.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1. 7. 22.
일반행정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1. 7.11.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1. 7.19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차 일반행정특별위원회(1991. 7.20) 상정, 의견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정과장 이완기)
   가. 제안이유
   - ㅇ 지역실정에 맞는 통·반장을 선정 위촉하여 원활한 대민행정 및 통·반업무 수행능력 제고하는데 있음.
   - ㅇ 통·반장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 특수시책 일환으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 지역에는 가급적 여자 통장으로 위촉하여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과 여성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음.
   - ㅇ 통·반장 정년을 제도화하여 신속한 동행정 수행능력을 도모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 ㅇ 통·반장 위촉대상 및 연령개정
   - ㅇ 통·반장 정년제 실시 : ┌통장 — 65세
     └반장 — 60세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통·반장 위촉시 여자 운운은 성차별 분위기가 있으므로 삭제가 어떤지.	· 도시 주택가에서(특히 아파트지역) 남자통장 지원자가 없고, 여성통장의 활동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여성 참여를 유도하려고.
· 반장과 통장의 역할이 밀접한 관계이어서 이의 서로 보완적인 선출은 어떤지.	·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해당없음
5. 수정안 요지
   - ㅇ 반장은 반주민의 동의로 선출, 통장이 위촉
   - ㅇ 통장은 반장이 선출 동장이 위촉
   - ㅇ 통·반장 연임시 위의 절차에 의함.
   - ㅇ 1992. 1. 1.일부터 시행
6. 심사결과
   수정안가결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부천시 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중 제2항, 제3항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②통·반장은 당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25세이상 58세이하의 주민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반장은 반주민이 선출하고, 통장은 반장이 선출한다.

③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통·반장정년) ①통·반장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통장 — 65세
2. 반장 — 60세

②통·반장의 정년은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통·반장의 정년 연장은 동장이 당해 통·반장의 신청에 의하여, 건강상태, 직무수행 능력